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9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정문 · 김용만 · 이연희
문진석 · 이성윤 · 김남근
한민수 · 이학영 · 안태준
김현정 · 김남희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 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 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 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 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 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 3항을 준용한다.</u>